

2020년 세법개정 상세내용(발췌)

[20200722발표]

□ 전통주 등 주류 제조장 방문 외국인관광객 대상 판매 주류 면세 (조특법)

- 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 제조장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*에게 직접 판매한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 면제

* (현행) 주한외국군인·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해 주세 면제

□ 주세 과세대상에서 '조미용' 주류 제외 (주세법)

- 조미용 주류는 음용 목적이 아닌 음식조리용 첨가물인 점을 감안하여 주세 과세대상 주류에서 '조미용' 주류 제외

□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(조특법)

-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응하여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'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인상

총급여 기준	현행	개정안
7천만 원 이하	300만 원	330만 원
7천만 원~1.2억 원	250만 원	280만 원
1.2억 원 초과	200만 원	230만 원

□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조특법)

- 온실가스 감축,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친환경차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(한도 390만 원*) 적용기한을 2년 연장

* 개별소비세 300만 원 + 교육세 90만 원 = 390만 원

□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* 적용요건 완화 (부가령)

* 수입시 세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유예하되, 세무서에 반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

-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

- (중소기업) 수출비중 30%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 원 이상
→ 수출비중 30%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 원 이상

- (중견기업) 수출비중 50% 이상 → 수출비중 30% 이상

☐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(개별소비세법)

- 담배 간 과세형평*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 소비세율을 니코틴 용액 1㎖당 370원 → 740원으로 조정

* (현행 세부담) 필러 : 필러형 전자담배 : 액상형 전자담배(0.7㎖) = 100 : 90 : 43.2

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종류 추가 (개별소비세법)

-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연초의 '뿌리·줄기' 추출 니코틴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담배 추가

* 현재는 「담배사업법」상 담배(연초의 '잎'이 원료)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 과세 중

☐ 공직퇴임 세무사관세사에 대한 수입 제한 (세무사법·관세사법)

- 5급 이상 공직퇴임 세무사·관세사*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·통관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수입 제한

* 기재부, 국세청, 관세청, 조세심판원 등 모든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한 세무사관세사

⑦ 관세 관련

☐ 모든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해 낮은 관세율 적용 (관세법)

- 반도체 제조장비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'전기식' 유량 자동조절기에 대한 관세율을 8%에서 3%로 인하

* (현행) '액압식 또는 공기식'은 3%, '전기식'은 8% 관세율 적용

☐ 통관 관련 제도개선 (관세법)

- 현재 「관세법」에는 통관보류 사유*만 규정되어 있는 점 감안, 통관보류 후속절차, 권리구제 절차 등 세부사항을 추가 규정

* 관세법 위반 또는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,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, 수출입 신고서·제출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

- 통관보류 시 화주에게 통지 의무, 화주의 소명자료 제출 및 통관보류 해제 신청 등 규정

○ **국민건강·사회안전 위해물품**(예: 폐기물)을 운송수단으로부터 **하역**하는 것을 **제한**할 수 있는 근거 신설

□ 무관세 물품*에 대한 가산세 신설 (관세법)

* 기본세율·협정관세율 등이 0%이거나, 감면규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 물품

○ 무관세 물품에 대해서도 무신고·과소신고 시 제재*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「**누락 과세표준 × 0.8~3.2% ****」 **가산세 신설**

* (현행) 무신고·과소신고 가산세 = 부족세액 × 10%(무신고 20%)

→ 무관세물품은 납부할 관세가 없어 무신고·과소신고 시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함

** 가산세율 : 과소신고 0.8%, 무신고 1.6%, 부정행위로 무·과소신고 3.2%

□ 관세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유효기간 연장 (관세법)

○ 납세자 등이 **특정물품의 관세 품목분류**에 대해 과세관청에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그 심사결과에 대한 **유효기간을 연장**

- **3년 → 심사결과 변경 전까지 유효**

□ 특수관계 거래시 관세 과세자료 제출제도 실효성 제고 (관세법)

○ 특수관계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, **거래가격의 적정성을 납세자가 증명**하도록 하고 **불충분시 거래가격 적용 배제**

* 현재는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**거래가격이 특수관계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**하는 경우에만 배제 가능

- 또한, **특수관계 거래가격의 적정 여부**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**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** 신설*

① 동종·동질물품 가격 등과 **10% 이상 차이**, ②거래가격이 **해당 기업의 비용·이윤 미반영**, ③ 해당 산업의 정상가격결정 관행에 미부합 등

- 특수관계 거래에서 납세자의 과세자료 **미제출 또는 거짓제출**에 대한 과세관청의 **시정명령 미이행시 2억원 이하 과태료** 추가 부과

* (현행)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(개정) 현행 + 과세관청의 시정명령 미이행시 2억 원 이하 과태료 추가 부과

□ 관세 과세가격 결정 제도(관세평가) 개선 (관세령·규칙)

※ 「법적 안정성 강화를 위한 관세평가 제도개선」(‘20.6.30.)에서 既 발표

- 관세평가는 과세표준인 **과세가격을 결정**하는 것으로서 세액 결정의 **중요사항**인 점을 감안하여 **제도 개선**

- ① 납세자의 권리·의무와 관계된 **중요사항*** **법규성 강화**(고시→영규칙)

* (예) 합리적 기준에 따른 **과세가격 세부 결정방법**(여행자 휴대품,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 등)

- ②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**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***

* (예) 코로나19 등 긴급사유 발생시 적용되는 항공운임 관세특례 요건 정비,
과세가격 사전심사 자료 보완기간 확대: 15일 → 일반물품 20일, 특수관계물품 30일

- ③ 법령 용어를 국민의 시각에서 **알기 쉽게 풀어쓰기***

* (예) 권리사용료 산출시 ‘권리허여자’ → ‘상표권 등 권리의 사용을 허락한 자’

□ 수정수입세금계산서* 발급사유 확대 (부가세법)

* 세관장이 수입자화에 대해 당초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

- 수입자가 수입 부가가치세 **수정신고**시 **수정수입세금계산서** (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)를 **발급**받을 수 있는 **사유 확대***

* (현행) 수입자의 착오·경미한 과실·無귀책의 경우에만 발급 허용

(개정) 「관세법」상 **벌칙사유**(가격조작죄 등)나 **부당행위**(자료 파기 등)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**발급 허용**

□ 관세 심사청구 관련 관세심사위원회 의결기관화* (관세법)

* 「민간위원 20명 + 정부위원 9명」으로 구성 : 현재는 심의기관으로 운영 중

- 관세 불복절차의 투명성·공정성 제고를 위해 **관세 심사청구 결정기관**을 **합의체**로 변경 : 관세청장 → 관세심사위원회

□ **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(관세령)**

- 할당관세, FTA 협정관세를 적용*받기 위해 납세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**주무부처 장관 추천서의 제출기한을 연장**
-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→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제출
- * 절차: (주무부처 장관) 수입자별 수입물량 할당 → (수입자) 운송입항 → (주무부처 장관) 추천서 발급 → (수입자) 할당관세 등 적용 신청(주무부처 장관 추천서 첨부)